

나. 提出者：大邱直轄市長
(家庭福祉局長)
다. 檢討期間：'93年 1月 15日～
2月 18日(4日間)

2. 主要骨子

- 家庭福祉館을 사용하고자 하는 者는 市長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, 시설사용에 따른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용료 징수기준을 新設
- 家庭福祉館의 運營을 위하여 보육교사, 조리사, 교육운영 요원, 청원경찰등 운영요원을 둘 수 있도록 하고, 실비 변상 기준을 新設
- 關係公務員 및 專門家로 運營委員會를 구성하여 家庭福祉館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함.

3. 檢討意見

- 大邱直轄市 総合家庭福祉館設置 및 運營條例는 '91年12月 第6回 臨時會時 審議·議決되었으며,
- 條例制定時には 현재 総合家庭福祉館을 관장하고 있는 兒童青少年相談所職制가 設置되기 전으로서, 위탁운영하는 방향으로 條例를 制定하였으나,
- '92年7月25日 兒童青少年相談所設置條例가 制定되고,

(参照)

1. 提出過程

가. 提出日字：1993年 2月 15日

- '92年9月2日 직원 14명이 배치되어, 綜合福祉館 운영을 관장함에 따라,
- 綜合福祉館 운영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條例를 改正코자 하는 것임.
 - 改正條例(案)의 使用料徵收規程은, 綜合福祉會館과 女性會館의 施設別 使用料徵收規程과 유사하게 규정하였으나, 保育室은 國費補助를 받는 공립시설로 운영하기 위해 保健社會部 保育事業指針에 의하도록 하였음.
 - 운영요원으로는 보육교사, 조리사, 교육운영요원, 청원경찰등을 둘 수 있으나, 인원에 대하여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앞으로 規則을 정할 것으로 판단되며,
 - 報酬水準은 女性會館이나 綜合福祉會館의 勤務者 실비변상 기준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며, 특히 國費支援으로 운영될 보육실의 보육교사의 보수는 保社部의 社會福祉施設職員報酬規定에 의하도록 하였으며,
 - 專門家 및 關聯公務員으로 구성될 大邱直轄市綜合家庭福祉館運營委員會는 福祉館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및 운영요원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

- 의하도록 함으로써 福祉會館 運營에 효율을 기하도록 하였음.
- 이상에서와 같이 改正條例(案)은 福祉會館의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자 함이므로 이견이 없으나,
 - 위탁운영중인 물리치료실과 앞으로 위탁운영 예정인 노인급식소의 사용료는 저소득층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료를 낮게 규정하고 있으므로,
 - 수탁운영자들이 條例에 規定된 기준대로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하고, 저소득층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철저히指導·監督함으로써, 저소득층 복지시혜 확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.

4. 改正條例(案)

대구직할시종합가정복지관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(안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대구직할시 종합가정복지관(이하 “가정복지관”이라 한다)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위치) 가정복지관은 대구직할시 서구 평리동 614의 48번지에 둔다.

제3조(용어의 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

같다.

1. “복지관”이라 함은 보육실, 물리치료실, 세미나실, 경로당, 노인공동작업장, 청소년교실, 직업보도강의실, 독서실, 강당, 노인급식소 및 부대시설을 말한다.

2. “복지관의 사용”이라 함은 제1호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교육 수강, 영·유아 위탁, 기타 부대 시설 사용행위를 말한다.

제4조(업무와 기능) 가정복지관의 업무 및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.

1. 노인 여가선용을 위한 경로당 운영 및 교양강좌
2. 노인성 질환자를 위한 물리치료실 운영
3. 노인 소득향상을 위한 취업알선 상담 및 공동작업장 설치 운영
4. 저소득 계층의 맞벌이 부부를 위한 보육실 운영
5. 청소년 선도를 위한 교육 및 독서실 운영
6. 청소년 상담 및 직업보도
7. 저소득 취약가정의 부녀자 교육
8. 기타 가정복지에 필요한 사항

제5조(이용대상) ①가정복지관의 이용대상은 저소득 계층의 유아, 아동, 청소년, 노인 등으로 하되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한다.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용대상의 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6조(위탁운영) ①대구직할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은 가정복지관 시설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복지법인, 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②시장은 제1항에 의하여 가정복지관을 위탁한 경우, 시설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.

제7조(수탁자의 의무) ①제6조 제1항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(이하 “수탁자”라 한다)는 성실하게 가정복지관을 운영관리하여 가정복지 증진에 노력하여야 한다.

②수탁자는 보조금을 시설 운영에 직접 사용하여야 한다.

③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이 조례에 의한 명령이나 시장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.

제8조(사용허가 및 사용료 징수)

①복지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지관의 시설 사용허가를 하였을 때에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사전에 징수하여야 한다. 다만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감면 또는 면제할 수 있다.

제9조(사용료 반환)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. 다만

다음 각호에 해당할 때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 할 수 있다.

1. 복지관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 될 때
 2.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 할 때
 3. 사용예정일 5일전에 사용자가 취소원을 제출하여 시장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
- 제10조(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)**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이용제한 또는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.
1. 전염병 및 정신질환자
 2. 공공질서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자
 3. 사용허가 목적에 위반될 때
 4. 기타 이용제한 또는 허가취소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.

제11조(운영요원) ① 가정복지관에 보육교사, 조리사, 교육운영요원, 청원경찰 등의 운영요원을 둘 수 있으며 시장이 위촉하되 위촉기간은 1년으로 하며 그자격에 필요한 사항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.

- ②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효율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회저명인사 및 외래전문인을 강사로 초빙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의 초빙강사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

할 수 있다.

제12조(실비변상) ① 제11조 제1항에 의한 운영요원에게 “별표 2”의 기준에 의한 지방공무원에게 지급되는 봉급액 및 기말수당에 상당하는 금액과 50%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교육운영요원은 교재연구수당,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, 직무수당과 복리후생비(정액급식비, 체력단련비)를 조리사, 보육교사 및 청원경찰은 가족수당, 자녀학비보조수당과 복리후생비(정액 급식비, 가계보조금, 체력단련비)를 지방공무원 보수, 수당규정 및 예산관계법령 등에 의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③ 교육운영요원, 조리사, 보육교사 및 청원경찰에게 공무상 출장을 명하였을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실비변상 기준 직급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13조(운영요원 해촉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그직을 해촉할 수 있다.

1.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
2. 법령 또는 정당한 사유없이 업무상 지시를 위반한 자
3. 품위를 손상한 자
4. 강의를 거부하거나 직무수행

을 고의로 회피한 자

제14조(감독) 시장은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탁자의 시설운영 상황을 조사하게 하거나 장부,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.

제15조(위탁의 취소)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.

1. 수탁자가 제7조의 의무를 위반하였을 때
2. 수탁자가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
3. 수탁자가 위탁조건을 위반하였을 때
4. 공익상 위탁 운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
5.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

제16조(양도 및 전대금지) 복지관의 사용 허가를 받은 자는 시장의 동의 없이 그 사용권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

없다.

제17조(위원회구성) ①가정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관련 공무원 및 전문가들로 하여금 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.

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는 종합가정복지관의 운영에 관한 기본사항 및 제11조에 의한 운영요원의 위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여 위하여 대구직할시종합가정복지관운영위원회를 둔다.

③아동, 청소년 지도에 관한 전문적인 사항에 대하여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별도의 전문자문위원회를 둔다.

④위원회의 회의소집 및 필요에 따라 개별출석시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1조 제3항에 준한 수당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18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【별표 1】

복지관시설사용료

구 분	기 준	요 금	비 고
보 육 실	1인 1월	보건사회부 보육사업에 포함	

구 분	기 준	요 금	비 고
강 당	평일 주간1회 1시간	10,000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○ 토, 공휴일 및 냉난방시 평일 사용료의 20%를 가산한다. ○ 야간은 주간사용료의 20%를 가산 징수한다. ○ 매 1시간 초과시마다 사용료의 20%를 가산 징수한다.
세 미 나 실	평일 주간1회 1시간	5,000원	
독 서 실		무 료	
물리치료실	1 회	300원	
경 로 당		무 료	
노인공동작업장		"	
노인급식소	1 회	100원	
기 술 교 육	과목당(1인 1월)	4,000원	

【별표 2】

실 비 변 상 기 준

구 分	기 준 직 급 호 봉	비 고
교육운영요원	6급 지방공무원 1호봉에 준함	
조 리 사	8급 " " "	
보육교사 1급	보건사회부 사회복지시설직원 보수규정에 의함	
보육교사 2급	"	
청 원 경 찰	순 경 8 호 봉 에 준함	